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건물인도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에게 19〇〇. 〇. 〇〇.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20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.
- 2.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20○○. ○.경 원고는 피고 와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 연장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,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(IMF)관리체제가 끝나 주변 전세시세가 다소 오른 시점이라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되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.

- 3. 그런데 피고는 금 10,000,000원 이상 그 임차보증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영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위 건물는 위달라고 하였으나, 피고는 이사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전세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의 1. 2 각 통고서

1.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건축물대장등본1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○○아파트 가동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

1층 000.00 m²

2층 000.00 m²

3층 ○○○.○○m²

4층 000.00 m²

5층 000.00 m²

6층 000.00 m²

7층 000.00 m²

지층 000.00 m²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가-5-505

구조 철근콘크리트조

면적 5층 505호 OO.Om²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○○○○m²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ㅇㅇㅇㅇ분지 ㅇㅇ.ㅇㅇ㎡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gv
제출부수	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